

부산대학교 제55대 총학생회

제7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수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시: 2023년 11월 10일(금) 20시 20분
장소: 문창회관 3층 대회의실
기록물 책임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요섭

I. 출결 점검(가나다 순)

시간	위원장	부위원장	간호대	경영대	경통대	공과대	나노대	동아리 연합회	사범대	사회대	생자대
	김요섭	이준호	강효은	심혁	채민	정지석	여택원	최종일	최용권	박민지	김지윤
20:20	x	o	o	지각	o	o	o	x	x	o	o
20:47				o							
시간	생과대	약학대	예술대	의과대	인문대	자연대	정의대	치의전 학사과정	한의전 학사과정	선거 집행위원	선거 집행위원
	장정윤	이수연	유다영	이병주	최기혁	최한결	이성주	정해린	정덕윤	김세현	정재훈
20:20	공결	o	o	o	x	조퇴	x	x	x	o	o
21:40						o					

재적위원: 22명 / 개의요건: 12명 이상 출석 / 의결요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참관인 : 4명
※ 총 재석인원 : 14명

II. 보고안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고
- 단과대학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보고

III. 논의안건

- 사건번호(2023-1) 심의에 관한 건
- 제56대 총학생회장단 선거운동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건

IV. 기타안건

-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

II. 보고안건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고

- 23. 11. 03.(금) 제1차 롤미팅 실시
- 23. 11. 08.(수) 후보자등록 공고(2개 선거운동본부)
- 23. 11. 09.(목) ~15.(수) 공동정책자료집 수합 중

2. 단과대학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보고(가나다 순)

간호대학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경영대학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경제통상대학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 11/6(월) 1차 롤미팅 진행 완료 - 11/7(화)~9(목) 후보자등록 진행 - 관광컨벤션학과 후보 미등록 - 단과대학, 무역학부, 경제학부, 국제학부, 공공정책학부 후보 등록 완료
공과대학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나노과학기술대학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동아리연합회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사범대학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 롤미팅 진행 완료 - 후보자 추천서명 시작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생명자원과학대학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 11/2(목) 선거시행 및 일정 공고 - 11/6(월) 사퇴공고 - 11/7(화) 제1차 롤미팅 - 11/8(수)~10(금) 후보자 등록
생활과학대학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 11/7(화) 롤미팅 완료 - 11/8(수)~9(목) 추천인 서명 - 11/10(금) 후보자 등록
약학대학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 11/5(일) 1차 롤미팅 완료 - 11/7(화) 후보자 등록 완료
예술대학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 11/1(수) 제37대 예술대학 학생회장단 선거 시행 공고 - 11/2(목) 휴학생 권리회복을 위한 학생회비 추가납부 공고 - 11/2(목) 제37대 예술대학 학생회장단 선거 제1차 롤미팅 공고 - 11/5(일) 각종 사퇴 공고 - 11/5(일) 선거운동규칙 예술대학 선거관리위원회 서면 의결 진행 및 제정 - 11/6(월) 제37대 예술대학 학생회장단 선거운동규칙 제정 공포 - 11/6(월) 제37대 예술대학 학생회장단 선거 제1차 롤미팅 - 11/8(수) 각종 사퇴 공고 - 11/8(수) 제37대 예술대학 학생회장단 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 11/9(목) 제37대 예술대학 학생회장단 선거 제1차 롤미팅 협의 결과 공고

	- 11/9(목) 제37대 예술대학 학생회장단 선거 제2차 룰미팅 공고 - 11/9(목) 제37대 예술대학 학생회장단 선거 후보자 등록 공고 - 11/9(목) 제37대 예술대학 학생회장단 선거 후보자 등록증 발급 - 11/10(금) 제37대 예술대학 학생회장단 선거 제2차 룰미팅
의과대학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인문대학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정보의생명공학대학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사과정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사과정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III. 논의안건

1. 사건번호(2023-1) 심의에 관한 건

- 불임자료 참고

부위원장: 간호대 선거관리위원장님과 생자대 선거관리위원장님도 의견 있으시면, 그리고 목격한 바가 있으시면 이야기해주시면 되겠음. 일단 부정행위 혐의 사실 먼저 낭독해 드리겠음. 2023년 11월 7일 화요일 13시 30분경 이장은 당시 예비 회장 후보자와 조력자 2명이 사범대학 학생회실에 방문하였음. 이장은 발언하는 동안 이장과 조력자 2명이 각각 들고 있는 추천서명용지에 학생들이 추천서명을 하였음. 2023년 11월 8일 15시경 시월광장 일대에서 한성익 당시 예비 부회장 후보자는 제3자가 휴대하고 있는 추천서명용지에 서명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를 적발한 인문대학 학생회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지되었음. 두번째 사항의 경우 인문대학 선거관리위원장이 직접 목격하신 내용임. 인문대학 선거관리위원장님 말씀으로는 후보자가 아닌 분이 인문대학 선거관리위원장님께 직접 이제 추천서명용지를 내밀며 추천서명을 해달라고 했다고 말씀해주셨음. 이걸 적발하셔서 바로 제재하셨다고 함. 위 사실은 선거시행세칙 제31조제5항 및 제6항을 위반한 행위임. 해당 내용은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직접 선거권자를 대면하여 추천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고, '추천서명받아야 하는 행위는 대리할 수 없고 유도하는 행위만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조항임. 이에 따라 제1차 룰미팅에서 직접 추천서명을 받는 행위에 대한 정의를 후보자님들께 안내한 바가 있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어떻게 나가는지 말씀을 드리면, '선거운동원이 추천서명용지를 들고 있기만 해도 대리 서명에 해당된다.'라는 내용이 제1차 룰미팅에서 전달된 바가 있음. 후보자 등록기간에 추천서 용지를 배부할 때 추천서명을 꼭 직접, 대리하지 않고 후보자들이 받아야 한다고 전달한 사항이 있음. 이게 부정행위에 대한 혐의 사실을 그대로 낭독한 것임. 여기 계신 분은 목격자분이심. 목격자 진술 한번 받도록 하겠음. 당시 상황에 대해 그냥 겪으신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됨.

목격자: 제가 점심을 먹고 막 급하게 올라오는 것이라 저는 얼굴과 이름은 정확하게 잘 모르는 상태였고, 딱 학생회실에 들어갔는데 뭔가 추천서명지를 들고 있는 분들이 계시길래 서명을 받으러 온 분들이 들어오셨다고 생각하였음. 저도 서명을 하고 싶어 옆에 있었던 와중 어떤 분이 권유를 하셔서 서명을 하였는데, 나중에 들으니 그분이 후보자가 아니라고 하셔서 여기 진술을 하러 오게 되었음.

부위원장: 서명을 권유하셨던 분의 성별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목격자: 남자였고, 저보다 조금 더 키가 크시고 안경은 쓰지 않으셨던 것 같음.

부위원장: 제가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달받은 내용으로는 '이장은 후보 옆에 2명의 사람이서 있고, 셋 다 추천서명용지를 든 상태로 이장은 후보가 발언한 다음, 사람들이 와서 그 3명에게 나누어 추천서명을 했다.'라고 전달받았음. 그 내용이 맞는지.

목격자: 맞음.

부위원장: 목격자분 진술과도 일치함. 2023년 11월 8일 15시경 시월광장 일대에서 있던 것도 그 외에 추가 목격자가 제보한 상황이며, 인문대 선거관리위원장님 외에도 목격자가 있는 상황임. 정확히 언제 모셔야 하는지 시간이 확실치 않아서 긴 시간 대기하셨을 텐데 기다려주시고, 진술해주셔서 정말 감사함. 이제 퇴장하셔도 괜찮음.

20:19 목격자 퇴장

부위원장: 우선 목격자분의 진술은 이러함. 이제 소명을 들은 후 최종적으로 확정짓도록 하겠음. 그 룰스튜디오룸 A에서 두 분 모셔와 주길 바람. 인문대 선거관리위원장님 또한 전화를 통해서라도 진술

을 받도록 하겠음. 인문대 선거관리위원장님의 경우 직접 목격하셨는데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음. 일단 2번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보를 받아두기는 하였으며 목격자가 인문대학 선거관리위원장에 국한되는 것은 아님.

정재훈: 후보자들은 인정하였는지.

부위원장: 인정을 안 하지는 않았음. 그런데 약간의 반박을 하였음. 지금 그 소명을 들으려고 모셔오는 것임.

자연: 그럼 소명을 듣고 난 후 결과를 낼 때는 밖으로 나가시는 것인지.

부위원장: 나가셔야 함.

예술: 2번 혐의의 경우 제3자분의 성별을 알고 있는지.

부위원장: 2번은 여성이라고 들었음. 1번도 11월 7일 화요일, 이 당시 부회장후보자님께서는 밀양캠퍼스에 계셨음.

예술: 저도 제보할 부분이 있음.

부위원장: 일단 그 부분은 소명을 듣고 난 뒤에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듯함.

자연: 혹시 수요일 6시경 있었던 일에 대한 부분은 여쭙어보셨는지.

부위원장: 그 부분은 혐의 사실이 확실하지 않아 그걸로 의결을 볼 수는 없음.

사회: 이 정도면 과실이 아니라 고의라고 생각함.

부위원장: 저희가 일단 소명을 듣고 진행해야 함.

20:22 다원 선거운동본부 이장은, 한성익 입장

부위원장: 우선 혐의 사실을 저희가 낭독하였고, 이 혐의 사실에 대해 소명해주시면 될 것 같음. 소명에 대해 질문 가능함. 소명 부탁드립니다.

이장은: 제56대 총학생회장단 선거운동본부 '다원'의 정후보 이장은임. 일단 선거 부정행위 혐의 사실 총 두 가지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소명하도록 하겠음. 1번 같은 경우 2023년 11월 7일 13시 30분경에 사범대학 학생회실에 방문해 서명을 받은 것은 사실임. 하지만 선거시행세칙 제31조제5항을 보시면 후보자가 대면한 상태에서 추천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음.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직접 말을 했고, 모든 학우가 보는 앞에서 서명을 받는 것을 직접 다 일일이 대면으로 진행하였음. 그런 부분에서 일단 저희는 세칙을 위반하였다는 생각이 들지 않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후보와 저희를 도와주던 학우에게 사실 확인을 먼저 1차적으로 진행하였음. 당시 추천서명을 받은 인원이 인문대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임을 확인을 했고, 저희를 도와주던 그 학우가 가서 유도 행위를 하였으나 갑작스럽게 서명하였음. 2m 이내에 있었던 부후보도 그 상황을 인지하고 그 즉시 달려가서 대면으로 서명을 받으려고 했으나 이미 서명이 다 끝난 뒤였고 갑작스럽게 그 자리를 뜨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음. 분명히 선거관리위원도 규칙을 인지하고 있었고, 저희도 규칙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 과정에서 유인 행위를 잘못 판단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음. 그러나 저희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추천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제31조제5항, 대면해서 추천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고, 저희를 도와주는 선거운동원들에게 후보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절대 서명을 받지 말고, 정후보 또는 부후보가 와서 서명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대기하라고 무조건 규제를 시켰음. 이번 같은 상황에서, 특히 학우가 갑작스럽게 서명을 했고 또 선거운동원이 그 당시에 제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인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음.

부위원장: 후보자 측의 소명을 들어보았음. 이 소명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점이나, 여쭙보고 싶은 점 자유롭게 여쭙봐 주시면 될 것 같음.

자연: 이 상황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음. 2번 상황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진행이 되었다.'고 하셨는

데, 그 의미가 '선거운동원은 단지 용지를 들고 있었을 뿐인데 그 서명한 사람이 자신의 펜을 꺼내 서명을 했다.'는 식으로 갑작스럽게 했다는 것인지, 또는 '선거운동원이 용지와 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펜을 가져가서 갑작스럽게 진행하였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장은: 말씀해 주신 상황에 대해 두 번째, 후자에 더 가까운 것 같음.

부위원장: 그럼 첫 번째 상황에서는 사범대학 학생회실에서 후보님께서 발언하시고 나머지 두 분께서 일단 추천서명용지를 들고 있던 거는 맞는 것인지.

이장은: 맞음.

한성익: 제2번 사안에 있었던 부후보 한성익임. 2번 사안에 추가적으로 소명하겠음. 이 상황에서 저희 관계자가 서명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서명유도를 위해 '저희가 지금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저는 바로 앞 벤치에서 다른 분에게 서명을 받고, 그걸 확인하고 바로 뛰어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음. 하지만 그 유도 과정에서 이제 좀 서명이 끝난 상황으로 판단해 제가 끝 부분에서도 후보 출마를 위해 지금 이렇게 서명을 받으려고 한다는 내용을 전달하려고 했고, 그때 이제 인문대학의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안된다는 말을 남겨주시고 떠나가셨음. 그리고 절대로 대리인이 저 대신에 가서 서명을 받으려고 한 적은 없음. 계속 저희가 직접 대면 이 조항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점 꼭 인지 부탁드립니다.

이장은: 마무리 발언 하나만 해도 되는지.

부위원장: 마무리 발언 해주시고 제가 정리해 드리겠음.

이장은: 저희가 '추천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후보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선거운동원이 직접 가서 서명을 받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수십 번, 수백 번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그것이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는 과정에서, 선거운동원이 제지할 수 없었던 상황임을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음. 또 선거시행세칙 제62조제1항제4호 '세칙 또는 「선거운동규칙」에서 정한 면책·정당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정말 고의로, 또는 추천서명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학우분에게 '가서 서명을 받아오라.'고 하지는 않았던 점을 조금만 감안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음.

부위원장: 제가 소명인 분들의 발언을 정리해 드리면, 우선 조력자분들께서 추천서명용지를 들고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후보자들이 대면하고 있던 상태였고, 2번 사건 같은 경우 유도하는 과정에서 잠시 부후보님이 2m 정도 떨어져 있을 때 인문대학 학생회 선거관리위원장이 발견하여서 이러면 안 된다고 제지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신 걸로 이해해도 괜찮을지.

이장은: 2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서명을 유도하기 위해서 갔었던 상황에서 인문대학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이제 종이와 펜으로 서명하시고 그걸 바로 저희 부후보가 인지해서 달려갔지만 이미 서명이 다 끝난 상황에서 저희 선거운동원이 어떻게 제지를 할 수 없었던 상황임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음.

부위원장: 이해하였음. 그런데 저희가 제1차 롤미팅에서 '선거운동원이 추천서명용지를 들고 있는 행위도 추천서명을 받는 행위로 간주된다.'라고 전달드린 바가 있지 않은지. 그 사실을 지금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계셨던 것인지.

이장은: 1차 롤미팅에서 그런 내용을 따로 이야기한 적이 없는 것 같음.

부위원장: 당시 1차 롤미팅에 참여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분들께서 기억하시는 바가 있으신지. 일단 회의록에는 남겨져 있고, 저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그렇게 발언했던 취지 자체는 기억하고 있음. 일단 소명인분들께서 하신 소명은 저희가 이 제재 양정 과정에서 무혐의를 부과하든, 아니면 제재를 부과하든 간에 그거 부분은 저희가 고려하고 의결을 진행할 예정임. 제재가 결정이 되면 저희가 공문 형태로 선거운동본부에 메일로 통보해 드리겠음. 선거시행세칙에 따라서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니, 제재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 신청을 저희 선거관리위원회 메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음.

이장은: 알겠음.

자연: 혹시 하나만 질문해도 될지. 이장은 정후보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 다른 부분에 대해 여쭙어보고 싶음. 제가 저번 1차 룰미팅 때 총학생회장님께 여쭙어본 사항이 있음. 후보자가 옆에 있고, 그 추천서명을 다른 선거운동원이 받는 경우에는 후보자가 옆에 있어서 후보자가 말하는 것임에도 이게 금지되는 사항인지에 대해 제가 질문을 드렸음. 그 부분에 대해 총학생회장님께서 분명히 어쨌든 용지를 가지고 있고, 그 서명을 받는 대상이 선거운동원이기 때문에 안되는 상황이라고 답변해주셨음. 두 후보가 그때 있었던 것으로 제가 확실히 기억함. 혹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인지를 못하고 계셨는지.

이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조항의 해석의 차이가 조금 있었던 것 같음. 저희는 대면으로 추천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저희가 직접 그 서명을 보고 있고, 저희가 보는 시야에서 그 학우가 직접 서명하는 게 올바른 추천서명이다.'라고 인식하는 게 있었음. 제31조제6항인가에 아마 그 조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피선거자가 아닌 자가 대면해서 받는 서명은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있음. 그래서 저희는 '피선거자가 아닌 자가 대면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저희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와는 별개로 어떤 추천서명을 받는 것'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석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음.

김세현: 사실 제가 저번 1차 룰미팅 회의록을 작성하였음. 제가 작성한 바를 지금 좀 약간 참고하시라고 읽어드리자면, '추천서명이 가능한 시간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6일부터 8일까지임. 6일부터 8일까지 입후보하는 자만 추천서명을 받을 수 있음.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돕는 분들이 주위에서 같이 안내하는 건 괜찮지만 서명을 받는 자는 반드시 후보자들이어야 함. 선거운동은 도와주시는 분들이 추천서명용지를 들고 다니면서 서명을 받는 것은 금지된다는 것임.' 이라고 제가 작성하고, 결재를 받은 바 있음.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음.

부위원장: 추가적으로 소명이나 질의 있으신지.

공대: 2번에서 부후보님께서는 근처에 계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부후보님께서는 혹시 용지를 가지고 다른 분에게 사인을 받고 계셨던 것인지.

한성익: 맞음. 그때 제가 다른 학우님께 서명을 받았고, 서명을 받으면서 제가 왜 서명을 받고 있는지 설명해드렸음. 유도를 도와주시는 분께서 뛰어가서 그분께 서명유도를 했던 상황에서 서명을 받자마자 바로 달려갔음.

공대: 유도해주시는 분은 그때 추천서명용지를 가지고 계셨던 것인지. 그리고 그때 펜도 가지고 계셨던 것인지.

한성익: 맞음. 펜을 가지고 있었음.

부위원장: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지.

이장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해석의 차이가 너무나도 컸던 것 같은데, 저희는 선거 유도 행위 역시, 그냥 와서 '오셔서 서명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과 종이를 들고 있으면, 저희가 그 앞에서 서명을 받는 것까지 보는 것 역시 모두 '대면으로 추천서를 받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음.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음.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의 소명을 좀 일단 감안해 주시고 좀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음.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다원 선거운동본부가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절대적으로 부정행위를 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약속드리겠음.

부위원장: 감사함. 이제 퇴장해주시면 되겠음.

20:35 다원 선거운동본부 이장은, 한성익 퇴장

부위원장: 저희 1차 룰미팅에 대한 클로바노트 음성 메모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김세현: 맞음.

부위원장: 해당 자료 카카오워크로 전송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연: 예대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목격하셨다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함.

예술: 그때가 '햇불인의 밤' 행사가 있을 때로 기억하는데, 그때 제가 이장은 후보의 추천서명용지에 서명을 했었고, 시월광장 일대를 구경하고 있던 찰나였음. 저는 이장은 후보님만 알고 있었고, 얼굴을 본 적이 없어 정확하게 부후보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음. 그런데 추천서명용지를 들고 있는 분이 총 세 분이었음. 여자분 한 분에, 남자분 한 분이었고 부후보님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함. 그래서 이장은 후보님과 다른 두 분이 계셨는데. 추천서명용지를 각자 들고 계셨음. 제가 제1차 룰미팅에 오지 못하여 회의록만 읽어보았는데 추천서명용지를 들고 있어도 위반 행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저는 다 인지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함.

부위원장: 일단 제1차 룰미팅 회의록에 정확히 나와 있음.

예술: 맞음.

자연: 저는 근데 사실 납득이 안 가는 점이, 제1차 룰미팅 때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흘러들어서 그 조항을 망각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운동원들이 추천서명용지를 들고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왜 펜까지 들고 계셨는지 저는 납득하지 못하겠음. 애초에 서명 자체를 후보자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펜을 후보자만 들고 있는 것으로 제한을 뒀을 수도 있음. 그리고 애초에 용지와 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펜을 빼앗아가 갑작스럽게 서명을 했다는 것도, 그렇다면 그건 인문대 부회장님의 강요가 아니었는지, 잘못된 서명이 아닌지에 대한 생각이 듭.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통 상식적으로 들고 있는 펜을 빼앗아가 급하게 서명을 했다는 게 저는 사실 납득이 가지 않음. 그래서 용지와 펜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음.

부위원장: 저희가 제1차 룰미팅 당시 '선거운동을 돕는 분들이 주위에서 같이 안내하는 건 괜찮지만 서명을 받는 것은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음. 이 부분과 관련해 또 추가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반드시 후보자들이 서명을 받아야 한다.'임.

자연: 게다가 저는 그게 좀 해석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았고 옆에, 후보자가 마주 보고 있을 때 '서명을 받는다.'는 것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옆에 서 있을 때, 그걸 지켜보는 와중에 선거운동본부의 사람이 서명을 받는 것이 가능하냐.'라는 질문까지 제가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음. 때문에 저는 당연히 아무리 후보자가 보고 있어도 선거운동원이 받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함.

부위원장: 추천서명용지를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받는 행위'라고 제1차 룰미팅에서 안내된 바가 있음.

사회: 이번에 후보자 등록 공고가 올라갔는데, 이번 회의 결과로 인해서 그 후보자들의 기호 번호가 바뀔 수도 있는지.

부위원장: 사실 선거시행세칙에 따르면 규정을 위반한 추천서명활동은 무효로 하게 되어 있는데, 얼마나 추천서명행위를 위반했는지 저희가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 그래서 일단은 이 추천서명에서 저희가 무효된 추천서명인수를 임의로 정해서 자를 수도 없는 부분임. 저는 만약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면 최대한 제재를 통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음. 그럴 방법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사회: 저는 일단 아까 소명하실 때 진짜 모순적이라 생각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음. 일단 이 후보들 간에, 세칙에 관한 이해가 확실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진행하였음. 제가 그렇게 느꼈던 부분이 부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절대 대리인이 가서 서명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 반면, 정후보께서는 선거시행세칙에 대한 해석을 얘기하시며 '직접 대면했으니 문제가 없다. 직접 추천서명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음. 사실상 여기 첨부된 6호를 보면 '타인이 대리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음. 근데 정후보와 부후보 간의 의견 차이도 있고, 심지어 이 부분은 명시되어 있

음. 본인이 인지하지 않은 것이며 1차 롤미팅 때도 재차 설명을 했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과실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고의라고 판단됨. 그리고 아까 질문드렸던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추천인 서명을 6일부터 8일까지 받았는데, 마지막 날인 8일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면 사실상 처음부터 이런 일이 생겼을 것이라는 전제가 솔직히 어느 정도는 있음. 하지만 저희는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겠음. 그렇다고 하더라도 등록기간 2일에 걸쳐, 절반 이상에 걸쳐 더 많은 추천인의 서명을 받아왔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기호 번호가 정해졌으며 또 그걸로 인해 아까 2차 롤미팅 때 정해진 게시판에 누구의 포스터가 앞에 붙을 것인가까지 정해졌음.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 기호 번호까지 정해진 상황에서 이렇게 후보자등록기간 마지막 날까지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이런 추천인 명부에 관해서 인정을 해주기 어렵다고 저는 솔직히 판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호 번호를 미뤄야 한다고 생각함. 저는 솔직히 좀 중대하다고 생각함. 왜냐하면 오늘까지도 롤미팅에서 그 기호번호로 인한 논의가 계속된 만큼 중요하기 때문임.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함.

생자: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대로면 롤미팅에서 언급된 내용과 본인이 해석한 내용에 차이가 있어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하셨음.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해석의 차이가 있었다면 추천서명이 시작되기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해볼 수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

부위원장: 실제로 제1차 롤미팅에서 '선거운동을 돕는 분들이 주위에서 같이 안내하는 건 괜찮지만 서명을 받는 자는 반드시 후보자분들이셔야 한다. 다른 말로 선거운동은 도와주시는 분들이 추천서명용지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받는 것은 금지된다는 뜻이다.'라고 이야기했음. 자연대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질문한 내용을 한번 여기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음. 내용을 말씀해주시면 찾아드리도록 하겠음.

자연: 제가 '테이블 같은 거 두고 선거운영위원이 여기 앉아 있고, 후보자가 옆에 서서 이렇게 하는 것도 되냐.' 이렇게 질문하였음.

정재훈: 사실 생자대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제가 정말 하고 싶었음. 아까 정후보님께서 '해석의 차이'라고 하셨는데, 이 선거시행세칙과 선거운동규칙에 대한 유권해석은 오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만 해야 한다고 생각함. 사실 후보자의 자체적인 해석에 따른 혼란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해석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함. 후보자가 자체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이야기임. 저는 사실 '해석의 차이'라는 이야기가 잘 이해되지 않아 말씀드리는 것임.

부위원장: 자연대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발언하신 부분도 한번 찾아보았음. '저 서명 받는 거에 대해 이거 살짝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책상 같은 걸 두고 서명지를 이렇게 둔 다음에 옆에 회장 후보가 서 있고, 여기에 선본이 그냥 서서 이렇게 한 다음에 하는 건 되냐.'라고 여쭙보셨고 그에 대해 '회장 후보자들이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책상 위에 선거운동원들이 여기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위는 선거운동원 앞에 추천서명용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선거운동원들이 추천서명을 받는 것처럼 이거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방식을 이용한다고 하면 반대로 회장 후보가 앞에 있어야 한다.'라고 답변이 되었음. 그래서 사실은 다원 회장 후보가, 다원 선거운동본부에서 1차 롤미팅에서 그런 얘기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 성립이 안 되긴 함. 1차 롤미팅에서 확실히 언급한 바가 있음. 그리고 인문대학 학생회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한 내용도 지금 당장 인문대학 학생회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확인하고 싶지만, 여기 안 계시니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님. 일단 생자대 학생회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하나 더 추가로 말씀해 주셨음. 사실 다원 선거운동본부에서 대학생활원 식당 앞에서 추천서명 받는 행위가 있었는데, 그 부분 자체는 선거운동규칙 위반 행위는 아니었음.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하여 생자대 선거관리위원장님과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김지윤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의문사항이 하나 있는 것 같음. 당시 서명했던 학생에게 정확한 상황 설명을 요청했는데, 오늘 상황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하셔서 그 상황 남겨주시면 제가 여기에 말씀드릴 예정임. 예술대학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한 번 더 당시 혐의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술: 일단 2번 상황에 있어, 3시경에 인문대학 학생회 선거관리위원장님에게 제지를 당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부후보님께서 이 상황을 인지하고 계셨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 잘못된 상황임을 이미 3시경에 인지를 한 상태인데, 제가 다른 분들이 서명지를 들고 다니는 행위를 목격한 게 4시 반에서 5시 경이었던 걸로 기억함. 그래서 이미 이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인문대학 학생회 선거관리위원장님께 잘못된 상황임을 들은 상황에서 그 이후에도 이 부분이 고쳐지지 않고 계속되었다는 점을 단순 과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조금 듭. 그리고 똑같은 유형의 잘못이 두 번 이상 반복되고 있는 걸로 보아서 감경 요소보다도 가중 요소에 더 가깝다고 생각함.

20:47 경영 참석

부위원장: 예술대 선거관리위원장님이 4시 30분에서 5시 사이에 보신 게 정확한 것인지.

예술: 제가 4시 반쯤에 인문대학 선거관리위원장님, 생활과학대학 선거관리위원장님과 '햇불인의 밤'에 가서 목격한 사실임. 그때쯤 한번 뵈었음.

부위원장: 인문대학 학생회 선거관리위원장과 함께 목격한 건 아니신지.

예술: 맞음. 같이 목격한 것은 아님.

부위원장: 알겠음. 생자대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 또한 전달드리겠음.

생자: 대학생활원 식당 앞 작은 주차장 옆, 약 11시 35분에서 40분 사이 한성익씨 포함 3명이 있었음. 추천인 서명 표는 다른 학생이 들고 있었고, 추천인서명을 해달라는 말은 한성익씨가 했음. 이번 선거를 나가게 되었는데 추천인서명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뉘앙스로 말함. 추천인서명용지는 선거운동원이 들고 있었고, 본인과 일행은 선거운동원이 가지고 있었던 용지에 서명을 남겼음.

부위원장: 일단 이 내용 자체를 일단 이번 의결에 반영하기에는 살짝 애매한 점은 있음. 일단 이런 제보가 추가적으로 있다는 점을 양지하시고 저희가 제재를 부과하면 될 것 같음. 경영대 학생회 선거관리위원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마지막으로 혐의 사실 낭독하고 소명 사실 정리해 드리겠음. '11월 7일 화요일 사범대학 학생회실에서 이장은이 발언하는 동안 조력자 2명이 추천서명용지를 들고 있었고, 당시 사범대 학생회실에 있던 선거권자들은 각 3명에게 나누어서 추천서명의 용지에 서명하였다. 2023년 11월 8일 수요일 15시경 시월 광장 일대에서 한성익은 제3자가 휴대하고 있는 추천서명용지에 추천서명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를 적발한 인문대학 학생의 선거관리위원장에 의해 제지되었다.' 이에 대한 소명은 '1번 상황, 사범대학 학생회실에서 있던 상황은 인정한다. 2번 상황, 한성익 부후보는 당시에 인문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추천서명을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으며, 당시 선거운동원이 추천서명용지를 들고 있었던 것은 맞으나 인문대학 선거관리위원장이 볼펜을 가져가서 수천 용지에 서명하였다.' 라고 소명하였음. 다만 예술대학 선거관리위원장의 증언에 의해 '4시 반에서 5시 사이에 인문대학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적발된 이후에도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로 최종적으로 상황을 종료하도록 하겠음. 인문대학 선거관리위원장에게는 전화를 통해 사실 확인만 한 번 하도록 하겠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별표에 따라 제재를 부과하면 됨.

21:50 (인문대학 선거관리위원장과 통화 연결)

부위원장: 소명에 따르면 '8일 수요일 15시경, 인문대학 학생회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운동원이 들고 있는 펜을 가져가서 선거운동원이 들고 있는 추천서명용지에 서명을 했다'라고 하는데 맞으신지.

인문(통화연결): 맞음

부위원장: 펜을 가져간 사실까지는 맞으신지.

인문(통화연결): 제가 펜을 가져갔다고 물어보는 것이지.

부위원장: 맞음.

인문(통화연결): 확인이 필요함. 상황이 펜 말고 종이를 저에게 건네고 펜을 건네었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부위원장: 종이와 펜을 건넸다는 말씀이신지.

인문(통화연결): 맞음.

부위원장: 당시에 주변에 있던 사람이 있는지.

인문(통화연결): 주변에 사람은 있었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있었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음. 제가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정황이 있었던 것은 아님.

부위원장: 일단 그러면 인문대학 학생회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서는 거기 선거운동원이 직접 추천서명 용지를 배부하였다고 증언하셨고, 선거운동본부 측에서는 인문대학 학생회 선거관리위원장께서 펜을 가져가시고 서명을 했다고 증언하여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음. 일단은 이것을 기반으로 저희가 제재 의결하도록 하겠음.

21:52 (인문대학 선거관리위원장과 통화 종료)

자연: 근데 펜을 가져갔다는 건 제가 추측성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소명할 때는 그냥 급하게 사인했다고 하셨음. 그러니까 두 이야기를 합쳐보면 선거운동원은 펜과 용지만 제출하고 조금 기다려 주시길 바랐는데 인문대학 회장님은 펜과 용지를 받으셨으니 당연히 사인하신 것이고 근데 후보자는 당연히 그냥 펜과 종이를 받고 기다리실 줄 알았는데 급하게 사인하셔서 자기가 못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닐까라고 조합됨.

부위원장: 이게 맞는 것 같음. 근데 제1차 룰미팅 결정 사항에 따라 선거운동원이 추천서명용지를 들고 있는 것 자체도 추천서명을 받는 행위로 저희가 간주를 했기 때문에 애매한 것 같음.

의대: 제가 다음주 화요일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화가 나 출석하게 되었음. 왜 그러냐면 오는 길에 제가 약 60명에게 질문하였음.'후보를 잘 모르는데 1번 2번 중에 누구를 뽑을 것이냐.'라고 질문하니 그러니까 59명은 1번을 뽑겠다고 이야기하였음. 잘 모르니까 1번을 선택하는 것임. 저는 솔직히 아까 사회대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호 1번을 받으면 제재를 받아도 그게 더 이득이니깐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저는 생각함. 그 두 사람이 추천서명 종이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두 명의 사람이 돕는다면 적어도 두 배의 사람을 모을 수 있음. 그러니까 빠져가는 사람들을 모을 수 있다는 것임.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않고 혼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빠져나간 사람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함. 이게 제재를 하는 것 자체가 제재 해도 결국 1번, 2번이 되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임. 이 부분을 바꿀 정도의 제재가 아니면 저는 제재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함.

부위원장: 그런데 기호 번호를 바꿀 수 있는 근거는 없음.

의대: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만 해도 당선됐다가 잘못되면 탈락임.

부위원장: 맞음.

의대: 이게 규칙을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서 하는 거는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도 아니라고 생각함.

사회: 추천인 명단을 전부 다 기각시킬 수는 없는지.

부위원장: 2,300명의 서명을 모두 기각시키자고 말씀하시는 건지.

의대: 의결해서 다시 하면 안 되는지. 저는 이걸 좀 아니라고 생각함.

사회: 그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음. 솔직히 이 사람이 후보자 등록한 게 맞는지까지 생각이 듭.

의대: 저도 그렇게 생각함.

경영: 추천인 서명 수로 후보자의 기호 번호를 배분하는 만큼 추천인 서명의 방식에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미 발견된 부정행위 외에도 얼마나 많은 부정행위가 이루어졌을지 모르는 일이며 정말 뒤흔들지 못한 일임.

부위원장: 선거에는 자유의 원칙이 있음. 자유의 원칙은 피선거권자로 가면 이것은 다른 의미이지만 선거권자가 자신 개인의 양심과 자유에 의해서 선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근데 선거권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정보를 종합해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음. 저희가 만약 이걸 통해 제재가 나간다고 하면 선거운동본부에 절대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임. 경고 3회를 받으면 선거운동본부 자체가 해산되기 때문에 제재 자체가 저는 절대 낮지 않다고 생각함. 기호번호를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고민을 하였음. 이 부분을 처음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추천서명용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정말 큰 화두였음. 전부 다 무효로 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탄압이 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일부만 찾아서 무효하자니 그 부분을 알 수 있는 수단이 없음. 그래서 일단은 기호번호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등록 공고도 나간 상황에서 하기보다는 일단 제재를 먼저 결정하겠음. 제대로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고 추후 또 의견을 수렴하는 걸로 하겠음.

생자: 추천인 서명 자체가 해당 후보자가 등록되는 것을 추천한다는 의미인데, 부정행위를 통해 수합된 추천은 진정성과 신뢰성이 없다고 생각함.

부위원장: 저희가 혐의 사실과 소명,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도록 하겠음.

공대: 저는 아까 예술대학 선거관리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한 번의 제재가 있었음에도 4시 30분 경에 후보자가 아닌 다른 선거운동원께서 용지를 들고 계셨다고 하였음.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 가중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이때 제재를 받은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러면 안 된다고 했던 거는 '선거운동원께서 사인을 직접 받은 행위'에 대해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지니고 계셨던 것은 그냥 처음부터 룰 숙지가 제대로 안 돼 있었던 것 같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중으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 과한 해석이 아닌가 생각함. 물론 이 행위가 잘못된 것도 맞고 룰을 숙지하지 못한 것 자체도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 상황이라고 생각함. 그리고 저도 예술대 선거관리위원장님과 같은 의견인 게 물론 잘못된 방법이기는 하나 추천서명을 뒤엎거나 없애거나 일부를 제거하는 것은 적합하지 못한 처사인것 같음. 왜냐하면 그 기준이 모호하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그래서 그 점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음.

경영: 부위원장님 말씀을 존중하자면, 이미 부여된 기호 번호를 바꿀 순 없겠지만 그에 준하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온오프라인 공고는 당연한 것이고 정말 엄중히 벌해야 함. 이런 일이 발생해 유감임.

부위원장: 우선 비위가 과실에 해당하는지 고의에 해당하는지부터 일단 수합을 해야 할 것 같음. 중앙선거관리위원장께서는 이걸 좀 정도가 약한 과실로 판단하신 것 같음. 일단 자유롭게 의견 내주시면 되고, 이거는 저희 여기 회의에 참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서 제재가 결정될 예정임.

의대: 저는 정도가 중한 고의라고 생각함.

자연: 총학생회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셨는지.

부위원장: 주의 1회임. 고의라고 일단 하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그 행위를 했다는 것이고, 과실은 정말 이것이 실수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인지, 이 부분에 따라 해석하기 나뉘는다고 생각함. 과실이라고 하면 룰미팅 때 그 이야기를 아예, 전혀 듣지 못해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면 과실이 될 수 있고, 정도가 중한 고의까지 가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추천서명을 받을 때도 인지했었지만 들키지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와서 거짓 소명한 경우에는 중도가 중한 고의가 될 것임. 룰미팅에서 그런 말이 있지도 않았고 그래서 정말로 그 행위가 잘못된 거를 몰랐을 때는 정도가 약한 과실이 될 것 같음. 혹시 과실로 생각하시

는 분들 있으실지.

정재훈: 저는 정도가 중한 과실이라고 생각함.

부위원장: 그럼 일단 다섯 분 정도가 '정도가 중한 과실'로 판명하셨고, '고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람. 여섯 분임. 일단은 '고의' 쪽이 좀 더 의견이 많음. 줌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모두 '고의'에 의견을 표해주셔서 고의가 8명임. 그러면 일단 감경 요소에 확실히 해당하지 않는 것 같음. 그 부분에는 동의하시는지. 감경 요소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것을 기본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가중 요소로 가야 할지를 좀 생각해봐야 함. 가중 요소에서 '똑같은 유형의 잘못을 2회 이상 반복한 경우'는 좀 적용이 힘들 것 같은 게, 이 부분은 저희가 이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했는데 똑같은 행위를 했다고 했을 때 가중 요소가 되는 걸로 저는 판단함. 그래서 이 가중 요소는 해당하지 않을 것 같음. 사전에 권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행한 경우, 반성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되는지를 좀 고려해봐야 할 것 같음. 특별인자는 해당하지 않는 것 같음. 이에 대해서 의견을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 롤미팅과 직접 추천인 명단을 받으러 갈 때 안내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음.

부위원장: 맞음.

사회: 저는 그 부분이 공고라고 해석됨. 그래서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전에 권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것이라고 해석됨. 심지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임. 세칙을 확인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임. 심지어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추천서명을 하거나 받는 활동은 타인이 대리할 수 없다고 나와 있음. 아까 정재훈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한 번 더 물어볼 수도 있었고, 이렇게 최소 지금 4가지 요소나 있는데 이 부분을 다 무시하고 가중 요소라고 저는 '기본'으로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워 가중요소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함.

부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실지.

의대: 저는 솔직히 부위원장님께서 선거 기호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학생회를 하니까 관심이 많지만, 주변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과 회장을 뽑으러 들어갔다가 총학생회장이 있으니까 뽑는 경우가 진짜 대부분임.

의대: 그러면 그냥 본능적으로 1번을 찍게 됨. 저는 진짜 거기에 100% 동의하기 때문에 진짜 그 표가 엄청날 거라고 생각함. 따라서 물론 객관적인 사실은 아니지만 저는 이 부분을 분명히 인지하고 했을 거라는 생각이 너무 확실하게 듭. 저는 그렇게 생각함.

사회: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게 몰랐다고 판단이 안 되는 게, 아까 분명히 부후보님께서 본인이 제지하러 갔다고 말씀해 주셨음. 물론 이것과는 사실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본인이 제지하러 갔다는 것은 문제가 되고 있으며 본인이 알았다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해석한 것임. 본인이 알고 있었다는 건 본인이 선거운동본부에 확실하게 그걸 이야기를 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함. 그렇기 때문에 몰랐다고 생각이 들지 않음. 본인 말로, 부후보님 말로 직접 본인이 '제가 제지하러 갔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음. 거기에 대해 교육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잘못임.

공대: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변호를 좀 하자면,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고의냐, 과실이나 했던 부분이고, 지금 저희가 의논을 나눌 부분은 가중의 영역인데, 가중은 아까 부총학생회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공식적인 제재가 들어가고 나서 한 번 더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가중'의 처벌을 받는 것임.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명시, 그러니까 누가 봐도 확실하게 선거운동원이 이 종이를 가지고 다니면 안 된다고 제재가 들어간 적이 없고 그거 잘못된 것을 발견한 이후로 그 이후로 또 가지고 다닌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음. 그 선거운동원이 종이를 가지고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제재가 들어간 적이 없지 않나, 그래서 가중을 받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함.

의대: 여기 반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부위원장: 반성하지 않는 경우는 일단 나중에 고려하도록 하겠음. 일단 사전에 권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음.

공대: 그건 아닌 것 같음

예대: 무시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음.

정재훈: 제 생각에는 이거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전에 권고를 받았다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두 설명이 아니라, '공식적인 문서로 하달된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음.

약대: 제가 조금 생각을 좀 오래 했는데, 일단 한성익 부회장 후보자님께서 달려가서 제재했다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아까 자연과학대학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직접 받는 것은 안 되니까 선거운동원이 직접 받는 것은 안 되는 것을 자기도 알고 있어서 달려가서 제지하신 것 같음. 근데 회장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자기가 대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운동원이 받는 거는 된다고 해석했다고 하셨음. 근데 지금 이 사건들이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보이는 것 같아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음. 근데 그거를 인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물론 잘못이라고 생각함. 왜냐하면 롤미팅에서 분명히 언급이 되었기 때문임.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 일관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고의로, 일부러 저랬다고 보기는 좀 아쉽지 않나 생각함. 그래서 일단 '가중'보다는 '기본'이라고 조금 더 생각함.

부위원장: 1차 롤미팅에서 저는 언급을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두세 번 정도 했기 때문에 인지를 못했다는 건 솔직히 저는 납득할 수 없음. 일단 의견이 좁혀지지 않음. 정도가 중한 과실이나 정도가 약한 고의나 이 두 개 중 하나인 것인지. 혹시 지금 정도가 중한 고의로 생각하시는 분 계신지. 정도가 중한 고의도 있고, 일단은 고의를 주자는 분들이 더 많은 것은 사실임. 일단 저희가 그러면 정도가 중한 과실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최소로 부여할 수 있는 건 주의 2회이고, 최고로 부여할 수 있는 건 경고 2회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정도가 중한 과실'에서 가중 요소에 해당하냐 안 하냐가 결정되면 경고 2회까지는 부여할 수 있는데, 저도 '정도가 중한 고의'에서 가중 요소에 해당하냐까지는 좀 의문이 있음. 그렇다고 해서 정도가 약한 고의에서 기본에 해당하는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의견이 좀 더 많이 나온 정도가 약한 고의에서 기본이나 가중해서 부여하는 게 일단 의견을 종합하면 그게 맞는 것 같음. 가중을 두냐, 기본으로 두냐에 대해서는 기본이 좀 더 맞는 것 같음. 사실 똑같은 유형의 잘못을 2회 이상 반복한 경우라고 보기 애매함.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전에 권고를 받았는데 이를 무시하고 행했느냐'가 가중요소에서 저희가 판단할 요소인데, 정재훈 위원께서는 문서 형태로 전달을 안 했기 때문에 사전에 권고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셨음. 사전에 권고를 받았는데 했냐 안 했냐가 문제인데, 하면 안 된다고 롤미팅 세 차례 언급은 하였음. 이것을 사전에 권고를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로 해석하면 될 것 같음.

사회: 저는 그런 말조차 의미를 담기 위해 롤미팅을 한다고 생각함. 심지어 롤미팅은 단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 전달보다도 후보자들과의 합의에 더 집중된 것임. 근데 심지어 그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롤미팅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별다른 의견도 없었고, 그래서 이대로 진행하겠다고 하였음. 심지어 권고를 넘어서 합의를 하는 시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 안 지켜졌다고 저는 생각함. 사실 우리가 롤미팅은 선거운동규칙에 포함하지 않는 내용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라고 판단함. 예를 들어 오늘 얘기했던 인스타그램에 포함하는 문구라든가 그런 것도 문서 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공고라고 저는 판단함.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제 인스타그램 게시물이나 그런 것을 올릴 때 문구를 포함해서 올리게 되고, 그래서 저는 롤미팅 때 구두로 설명한 것도 공고라고 판단함. 이게 제 의견임.

부위원장: 알겠음. 제35조, '롤미팅'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롤미팅에서 참석자에게 이 세칙과 「선거운동규칙」의 사본을 제공하고 입후보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에서 주의하여야 하는 사항을 안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확실히 그 의무를 수행했음. 그 의

무를 이행하지 않은 건 후보자와 선거운동본부에 있으니까 저희는 이 의견을 한번 종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음.

자연: 마지막 한마디만 하겠음. 제가 제재의 가중과 감경에 대해서는 의견을 처음으로 내는데,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어보고 많이 생각해 보았음. 사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유형의 잘못을 2회 이상 반복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음. 개인적으로 저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전에 권고를 받은 사항이라고 생각함. 다만 이를 무시한 것인지 진짜로 인지를 못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함. 그에 반해 감경 요소에 '진지하게 반성하는 경우'가 있음. 그러니까 얼마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계속해서 잘못된 부분을 인지하게 되었고, 앞으로의 선거기간의 선거운동에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올바른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감경과 가중이 어느 정도 각각 조금씩 들어갔다고 생각해 기본으로 주는 것이 어떠한가 개인적으로 생각함.

부위원장: 반성을 진지하게 하셨다고 판단하신 것인지.

자연: 인지 정도를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계속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은 말씀하셨고, 앞으로의 선거에서 그렇지 않게 하겠다는 것을 계속 언급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감경과 가중을 비슷하게 봐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

사회: 제가 아까 부후보님의 제지와 관련해서,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본인이 선거운동본부에 알려야 하는 의무에 대해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음. 그 '무시'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 고민했음.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이, 분명 부후보는 알고 있었음. 본인이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그걸 선본에 알려야 하는 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임. 근데 그렇게 다 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 '무시'에 해당한다고 저는 해석함. 제지를 해야 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임.

부위원장: 그러면 일단 의견을 종합해보면, 그냥 제재 기준에 따라서 의견을 종합해 드리겠음. 선거관리위원장분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제재의 최소는 경고 1회, 제재의 최대는 경고 2회이지만 경고 2회까지는 아닌 것 같음. 정도가 중한 고의의 가중 요소에 해당하나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최소 경고 1회에서, 경고 1회 및 주의 2회 사이가 될 것 같음. 그래서 경고 1회 및 주의 1회 또는 경고 1회 및 주의 2회로 결정 짓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둘 중 하나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세 가지 중에 결정할 수 있음. 경고, 경고와 주의 1회, 그리고 경고와 주의 2회임.

사회: 징계를 받은 후 무엇을 하게 되는지.

부위원장: 이의 신청이 있음.

사회: 이의 신청이 끝나고 나서 만약에 우리가 논의하는 대로 결정 났을 때, 경고 1회는 이렇게 해야 하고 주의 2회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처럼 각 징계 별로 정해진 것이 있는지.

부위원장: 그런 건 딱히 없음. 경고 3회 누적이면 그냥 선거운동본부 해산임.

부위원장: 양형 기준에 적혀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아실 것임. 거기에 적혀 있는 어떤 양형 기준이나 그다음에 어떤 정도 등은 저희가 '선거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쳤느냐'를 가장 중요한 기준임. 그러니까 사실은 다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고, 얼마나 고의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그 사람의 진술에 의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이것이 이의신청으로 들어오면 그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임. 그러니까 이 내용을 판단하실 때는 그 사람의 고의성과 어떤 진실성, 반성의 척도를 기준으로 보시는게 아니라, 그 행위가 선거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쳤는가를 중심으로 보시는게 옳음.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는 핵심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가장 객관적일 것이라고 생각함. 그래서 이 사건은 저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리는 첫 번째 징계 결정이 될 것인데, 이 첫번째 징계 결정을 기준으로 앞으로의 징계 양형이 결정이 됨.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징계의 양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굉장히 앞으로의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 그래서 어떤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 다음에 이 후보자가

그 내용을 얼마만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지, 그 부분을 기준으로가 아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보시면 굉장히 객관적으로 지표가 나옴. 그 행위가 선거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느냐를 기준으로 보시는 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릴 수 있는 최적의 결정이라고 생각함. 그래서 이거를 중점으로 좀 핀트를 잡고 이야기해주시는 게 어떤가 제안함.

의대: 저는 정말 지대하게 끼쳤다고 생각함.

부위원장: 일단은 추천서명 인수가 많은 것 자체가 후보자 등록 기간에 더 열심히 했다고 상대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기호번호도 그걸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선거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크다고 가정이 나온 상태에서 논의가 지속된 건데, 그러면 저희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을 해야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견 내주시고 결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음. 일단은 경영대 회장님이나 생자대 회장님이 계속해서 의견 주신 내용이랑도 동일함.

21:40 자연 퇴장

공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선거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음.

부위원장: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음. 일단 이렇게 추천서명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음. 그러나 솔직히 얼마만큼의 추천서명에 해당하는지는 솔직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사회: 그럼에도 마지막 날까지 이런 일이 있었음.

부위원장: 맞음. 마지막 날에도 그 일이 있었음. 별도의 의견 없으시면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는 저희가 초반에 이야기한 대로 좀 중대했다 정도로 이어나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세현: 아마 커뮤니티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임. 지금 선거가 굉장히 필요 이상으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좀 많이 부각되어있음. 그래서 이 결정이 미칠 파급력이 평상시에 낼 수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파급력보다 굉장히 크다고 생각함.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력을 보았을 때 경고 이상의 징계가 내려지는 상황은 중징계 이상임. 그러니까 선거의 표를 왔다갔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징계급임. 지금 두 가지 내용이 적힌 그 조서를 받으셨을 텐데, 두 번째 내용은 실제로 인문대 선거관리위원장에 의해 진행되지 않았고, 첫 번째 조서에 관해서만 진행이 되었던 내용임. 기본적으로 저는 조금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추천서명을 받은 것이 추천 받은 것이 잘못된 후보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서명을 무효로 하는 데에 그 내용이 그치고 있음. 그 내용을 다 읽어보셨을 것임.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 내용이 얼마만큼의 인원인지, 그 다음에 몇 명이 정확하게 그 행위로 인해 추천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징계를 제재하기 위해 이 회의가 펼쳐지고 있는 것임. 그래서 다양한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일단 1번은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앞으로 이 선거의 판도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내리는 징계는 무효로 처리된 몇 명의 선거인단 대신에 내리는 징계이기 때문에 평소에 내리는 징계보다 높은 수위를 잡을 수 없다는 것임. 애초에 몇 명을 깎으면 될 내용을 저희가 깎을 수 없기 때문에 징계를 부여하는 것인데, 지금 제가 받은 보고서 기준으로는 결국 사범대에서 진행되었던 추천서명인 수에 대한 부분이 빠지게 된 것임. 그래서 제가 사범대에서 받은 인원수를 제외하고 보았을 때도 1번 후보자의 추천서명인 수에서 사범대의 인원수를 제외하고 보았을 때에도 1번 후보자의 추천서명인 수가 훨씬 많은 상황임. 제가 지금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것임.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지적임. 저는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를 대비해 함께 말씀드리는 것임.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논리가 그 부분을 반박할 만큼 논리적이냐를 보는 것임. '후보의 기호가 선거인 수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는 게 아님. 그 행위가 발생했

을 때 무효로 체크된 그 인원수가 후보의 선거 번호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건 지대한 영향임.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몇 명이 빠지는 정도라면 그게 지대한 영향인지 그걸 다시 고민해봐야 할 문제임. 저는 냉정하게 이 문제를 봐야 함.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내린 첫 징계이기 때문에 그 징계가 기준이 되어버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징계, 어떤 추가 양정 사유라고 보지 않고, 기본 징계 수준에서 보는 것이 가장 맞지 않을까 생각함.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앞으로 선거기간 동안 두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운동이나 고소, 고발이 굉장히 많을 것임.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선거운동본부가 이 선거를 끝까지 정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목표이고, 이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목적임. 그런데 사건 하나하나를 개인으로 보고 이 사건 하나하나당 정형화되지 않은, 스탠다드하지 않은 기준을 가지고 양형을 세게 매겨버리면 앞으로의 선거를 진행함에 있어, 정말 순식간에 두 후보가 모두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음. 그러니까 두 선거운동본부를 모두 지키겠다는 뜻이 아니고, 이 선거가 고소고발에 의한 진흙탕 싸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거운동본부에서도 납득가능한 적당한 징계를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임.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이 토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함.

의대: 그런데 선거운동본부는 너무 당연하게 제일 낮은 제재를 했을 때 받아들이고, 적당한 수준의 제재도 반대하지 않을지.

부위원장: 주의 1회를 부과하여도 이의신청을 할 수는 있음.

의대: 그러니까 제일 낮은 수준에도 반박을 할 수도 있음. 그렇게 따지면, 물론 객관적인 사실은 아니지만 솔직히 목격자가 있는데, 그 부분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하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지.

부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정황 증거를 가지고 제재를 할 수는 없음.

의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나, 제 말은 어떻게 보면 양심의 문제라는 것임. 저는 그렇게 생각함.

경영: 추천서명의 부정행위에는 부여할 수 있는 최대 양형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부위원장: 사범대 학생회실에서 발생한 사실과 시월광장 일대에서 발생한 사실 모두 선거운동본부에서 인정하였고, 인문대 학생회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그 부분은 일단 서명하긴 했으나 부회장 후보가 오고 있었다는 것이 최종적으로 혐의한 내용이었음. 그 이후에 예술대학 학생회 선거관리위원장이 인지한 상황에서도 동일한 행위를 한 것을 목격했다고 하셨음.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 두 후보간 추천서명인 수가 유효한 것 기준으로 60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행위들이 합쳐졌을 때 그 600명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음.

경영: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었고, 부여하는 징계가 앞으로의 판도를 바꾸는 것 또한 이해하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 좀 더 과실을 두고자 함. 아까 말씀하신 데이터는 사범대학과 같이 발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하신 부분인데, 얼마나 더 많은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으며, 공정선거서약서에 서명했음에도 선거 시작점에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부분이 이 선거운동본부가 클린하게 선거를 진행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음.

부위원장: 사실 사범대학에서 발생한 부분 이외에 저희가 적발한 사실 이외의 부분을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정말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함.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했을 때 처음에는 제가 주의 2회에서 경고 2회 이상까지 가능하다고, 하고 줄여서 경고 1회에서 경고 1회 및 주 2회였는데 정도가 중한 과실 '기본'인 경우 주의 2회를 부여할 수 있음. 그래서 주의 2회가 가장 적절하다는 생각은 있음.

사회: 지금의 선거에는 당장은 이 사람들이 선거 처음부터 어떻게 명부를 받았는지 정확히는 모름. 그런데 '지대한 영향'이 딱 지금의 관점이 있고, 선거가 끝난 시점에서의 관점도 있을 것 같음. 그러니까 선거를 해보고 나니 진짜 기호 1번이어서 더 많이 뽑힌 거일 수도 있고, 물론 그 정확한 건 알

수 없음. 그런데 3일 내내 선거운동원이 추천 명단을 받고 진행을 해왔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면 어느 정도 그랬을 수 있겠다는 판단이 내려지는 부분이 있음. 아까 분명 정후보가 세칙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했음. 아까까지도 '세칙이 이렇게 직접 대면만 하면 되지, 직접 추천서명 받는 것에 관한 언급이라고 해석하지 않았다. '라고 본인이 말을 했고, 그렇다면은 추천서명을 받는 과정 내내 있어서 세칙을 이렇게 이해를 해왔다는 것임. 부후보는 반대의 상황이긴 하지만,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해서 제가 또 다른 상황이란 비교를 해보았음. 만약에 선거운동을 하다가 싸움이 나거나 하면은 당장 그 상황에서의 문제임. 그런데 이것은 그런 선거운동에서의 싸움 상황이 아니라 후보자 추천 명단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후보자가 괜찮겠지. ', '이 후보자가 나에게 직접 와서 이렇게 하니까 괜찮겠지. '하고 이 사람을 추천해준 것이고, 이 사람이 징계받을만한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단 추천해준 것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단순 선거운동에서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추천인 서명을 받는 그 기간 내에 계속했기에 그 어느때보다도 더 영향이 큰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됨. 이 부분이 좀 추상적으로 계속 전달이 되는 것 같음.

의대: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함. 그렇게 정후보님께서 계속 그렇게 세칙을 해석하고 있다고 하셨으니 분명히 계속 추천인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조력자와 같이 갔을 것이고, 객관적인 사실은 아니지만, 충분히 논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한 상황임. 물론 그게 정말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몇 백표를 가져다 줄지는 아무도 계산을 못할 것임. 그게 영향을 직접적으로 줬을지의 여부도 예상하지 못하지만, 안 줬을지도 예상을 못하는 것이니 딱 중간에 해당하는 것 정도는 징계를 줘야 한다고 생각함

경영: 솔직하게 제 식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선거운동본부였어도, 저희 애들에게 추천서를 그렇게 돌리고 다녔으면 저는 당당하게 중징계 먹었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절대 아님. 선본의 입장이 반대였어도 저의 의견은 동일했을 것임. 정해야 할 선거에서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함.

부위원장: 일단 상황을 한번 종합해 드리겠음. 사범대학 학생회에서 발생한 상황, 시월광장 넉넉한 터서 발생한 상황, 그리고 이후에 예술대학 선거관리위원장이 한 번 더 발견한 상황, 화요일에 생명자원과학대학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진 상황을 가지고 보았을 때 저희가 이 추천서명 인수가 정말 그 600명을 초과할 만큼 영향을 끼쳤는지와 이후에 있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판단해야 하는 것임. 근데 지금 사회과학대학 선거관리위원장, 의과대학 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경영대학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서는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하셨음. 이것까지는 다 정리가 된 것임. 그러면 나머지 분들의, 처음에 양형을 '기본'으로 하셨던 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장님께 의견을 여쭙보고 싶음.

공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두 번째에서 '대신해서 받는 경우'에서 부후보님께서 잘못을 인지하고 계셨고 제지하러 달려가셨다고 하였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위반한 행위가 오로지 선거운동원들이 추천서명 종이를 들고 다니는 것에서 위반이 명백히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을 없는 데서 막 행하였다고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음. 그래서 그 정도를 가지고 600명의 차이를 낼 수 있을지는 저는 의문이 듭. 그래서 저는 기본에서 주의 2회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음.

예술: 일단은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약한 정도는 아니라고는 생각하지만, 모든 걸 고려해 봤을 때 이게 고의성을 띠고 했냐는 걸 생각하면 일단 저는 과실 쪽에 좀 가깝다고 생각함. 일단 세칙 같은 경우에도 저희와 다른 해석을 하셔서 지금 시행이 되었고, 1차 룰미팅 때 사전에 공고했던 부분도 인지를 다 못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생각함. 이걸 그러면 뭔가 고의성을 띠고 행한 행위보다는 부주의에 가깝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재하게 된다면 '정도가 약한 고의'보다는 '정도가 중한 과실' 쪽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함. 가중 쪽으로도 요소를 생각했을 때 저희가 다뤄볼 수 있는 게 사전 권고를 받고 무시했느냐는 건데, 이게 무시라기보다는 진짜 부주의에 가깝다고 저는 많이 생각함. '무시'라는 단어 뜻 자체가 고의성을 띠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고의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상 물증이 없고 심증밖

에 없는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재를 내리는데 저희가 심증을 두고 '이렇게 했을 것이다. 고의성을 띠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주관성이 들어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로만 봤을 때 저는 고의성을 찾기보다는 부주의로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정도가 중한 과실'의 '기본' 쪽에서 제재를 내리는 게 제일 옳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생자대 선거관리위원장님 질문에 제가 답변드리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라고 전달한 걸로 알고있음. 인문대 학생회 선거관리위원장님이 잘못된 상황인 걸 전달하셨을 때, 용지를 가지고 있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행위인 것도 전달한 거냐고 여쭙보셨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리고 아까 진술하신 바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모호하게 말씀하셨다고 볼 수도 있음. 일단은 그러면 어쨌든 예술대학 선거관리위원장님과 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장님은 주의 2회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일단 최소 양형은 주의 2회가 됨. 그런데 가장 강경하게 생각하시는 사회대 회장님과 의과대학 회장님께서도 일단 과실로 보시지 않는 것 같음. 과실로 보려면 일단 아예 인지를 못하고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선관위를 통해 세 차례 정도 안내가 되었기 때문에 과실로 보기 힘들신 것 같음. 그리고 선거에 끼치는 영향 자체도 매우 크다고 보고 계심. 일단 정도가 약한 고의에서 기본으로 하면 경고 1회에서 경고 1회 및 주의 2회임. 그래서 최종적으로 두 가지 안에서 의결을 보면 괜찮을 것 같음. 주의 2회, 아니면 경고 1회 괜찮으실지. 아니면 경고 1회보다 더 중한 제재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예술: 지금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도가 중한 과실'과 '정도가 약한 고의'의 기본 제재에서 저희가 지금 합쳐지는 부분이 경고 1회임. 그래서 그 이상의 제재가 부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대: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고 1회 이상이면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영향을 끼칠 기본 정도인 경고 1회면 저도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추가적으로 의견 내실 분들 계신지.

의대: 근데 만약에 이의 신청하면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부위원장: 저희가 재심의를 하게 됨.

의대: 그 상태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부위원장: 일단 이의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결정한 것에 대해 반박할 것임.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함. 이의 신청 자체는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가능함.

김세현: 저는 경고 1회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별표의 양형 기준에 따라서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징계는 경고 1회임. 그래서 그 별표의 징계가 경고 1회가 최대이기 때문에 경고 1회를 넘어서는, 그리고 지금의 이 행위가 경고 1회보다 더 중한 징계라고 보기가 사실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경고 1회를 넘어서는 수준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래의 징계 중에서 유사한 징계를 찾거나 혹은 양형의 기준에 잡혀 있는 '정도가 중한', '정도가 약한'의 기준에 우리가 팩트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대응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의결을 좀 진행해 주시면, 혹여나 나중에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도 방어 논리를 좀 세울 수 있을 것 같음.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현행법에서도 추정에 의한, 유추에 의한 범죄행위에 대한 것은 철저히 금하고 있음. 기본은 이 사람이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무죄 추정에서 시작함. 그리고 무죄추정을 시작해 100에서 점수를 깎아서 0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0에 범죄 행위를 찾아 조금씩 쌓아나가는 방향임.

부위원장: 추천서명 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의 2회가 부과됨. 추천서명 시간을 지키지 않을 것보다 이 사안이 더 중하다고 판단하시면 경고이고, 그게 아니면 주의 2회가 맞음. 저는 판단을 말씀드릴 생각은 없고, 의결을 보도록 하겠음. 경고 1회를 부여하시는 것에 동의하시는 위원분들께

서는 손을 들어 의견을 표해주시기 바람. 8분임. 주의 2회를 부여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위원분들께
서는 손을 들어 의견을 표해주시기 바람. 5분임.

다원 선거운동본부에 대해 경고 1회의 제재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동의: 13명 중 8명.

부위원장: 경고 1회 8명, 주의 2회 5명으로 다원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제재는 경고 1회로 결정되었
음을 알려드립니다. 논의안건 1호에 대한 안내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끝난 후 추가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음.

2. 제56대 총학생회장단 선거운동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건

부위원장: 논의안건 2호임. 선거운동규칙 개정임. 저희가 룰미팅에서 합의된 내용을 선거운동규칙에 반영해야 함. 선거운동규칙에서 개정해야 할 부분은 크게 없음. 두 가지인데,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함. 그리고 제16조의 2를 신설함. '후보자의 명함은 제16조에 따른 특수선전물로 본다.', '후보자의 명함은 기호번호, 선거운동본부의 이름과 슬로건, 후보자의 성명, 사진, 경력을 게재할 수 있다.', 3항, '후보자의 명함 크기는 최소 45mm*85mm에서 최대 55mm*95mm로 한다.', 4항, '후보자의 명함은 선거운동원이 직접 선거권자를 대면하여 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였음. 여기에 각 선거운동본부의 합의 하에 선거운동본부장의 명함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만들도록 하겠음. 우선 이 부분에 대해 개정 의결을 보면 됨. 의안 정리 권한을 중앙선거관리위원장한테 주시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권 하에 아까 룰미팅에서 결정된 내용,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을 하나의 조항으로 만들어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임. 그리고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선거운동본부의 공문을 통해서 송달할 예정임.

김세현: QR코드 내용이 빠져있는 듯함.

부위원장: 그 내용도 반영하도록 하겠음.

김세현: 알겠음. 그런데 슬로건도 게재 가능한데, 만약 슬로건에 공약이 포함되면 어떻게 되는지.

부위원장: 공약 사항만 배제하기로 했음

김세현: 그러니까 슬로건에 공약이 들어가도 괜찮다는 것인지.

부위원장: 슬로건에 공약이 들어가는 경우, 그건 공약 사항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음. 애초에 저희가 공동정책자료집을 제출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재되는 공약들은 공약 사항으로 간주할 수 있음.

김세현: 예를 들어 한 선거운동본부의 슬로건이 '깨끗한 학생 이용시설, 깨끗한 학생 자치'라고 하였고, 그래서 공약이 학생자치이용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고 가정함. 그러면 저 슬로건을 빼야 하는지. 그러니까 말씀드린 요지는 슬로건의 공약이 묻어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임. 예를 들어서 Shall:We의 슬로건도 마찬가지임. '우리가 함께, Shall:We'임. 그러면 함께하는 모든 공약이 어떻게 보면 공약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임.

사회: 세부 공약과 방향성 정도로 구분하는 건 어떨까 함. 일단 슬로건은 사전에 받아볼 수 있는지.

부위원장: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청하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음.

사회: 그러면 저희끼리 심의를 해서, 그때 이야기를 한 번 해보아야 할 것 같음.

부위원장: 어차피 명함이 특수선전물이라 저희가 승인하기는 해야 함.

공대: 그때 이야기를 해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김세현: 그렇다면 '슬로건에 구체적인 공약을 언급하는 것은 금지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그 내용을 선거운동본부에 빠르게 통지하는 것은 어떤지.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이제 룰미팅을 마치고 선거운동본부가 나가셨는데, 번호도 정해졌고, 규칙이 정해졌기 때문에 선거운동본부에서는 각종 선전물을 바로 제작 시작하였을 것임. 그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함.

부위원장: 알겠음. 빠르게 전달하도록 하겠음. 다시 의결해 보도록 하겠음. 제56대 총학생회장단 선거운동규칙 개정안임.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함. 그리고 제16조의 2, 선거운동본부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장의 명함을 신설함. 제16조의 2 제1항, '후보자와 선거운동본부장의 명함을 제16조에 따른 특수 선전물로 본다.', '제2항, 본조 제1항에 따른 명함에는 기호번호, 선거운동본부의 이름과 슬로건(공약사항을 포함하지 않는 범위), 선거운동본부 인스타그램 아이디, 후보자와 선거운동본부장의 성명, 사진, 경력을 게재할 수 있다. 다만 슬로건에 공약사항을 포함할 수 없다.'라는 맥락으로 넣고 제3항, '명함의 크기는 최소 45mm*85mm에서 최대 55mm*95mm로 한다.', 제4항, '본조 제1항에 따른 명함은 선거운동원이 직접 선거권자를 대면하여 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하겠음.

부위원장: 의결해 보도록 하겠음. 동의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 의견을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음.

제56대 총학생회장단 선거운동규칙 일부개정안에 동의: 13명중 12명

부위원장: 출석위원 13명 중 12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이 결정되었음을 안내드림. 개정안은 자구 수정을 거친 뒤 공포하도록 하겠고, 선거운동본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 모두 전달하도록 하겠음. 마지막으로 이의신청이 들어올 것 같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화요일쯤으로 예상하고 있음. 3일 이내이기 때문. 그때 다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최하도록 하겠음.

IV. 기타안건

1.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

부위원장: 화요일부터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됨. 그리고 제가 단과대학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보고를 받아보았음. 경통대는 관광컨벤션학과의 선거가 아예 무산이 된 것인지.

경통: 관광컨벤션학과 후보자 미등록임.

부위원장: 공과대학에는 후보자가 등록되지 않은 단위가 있는지.

공대: 없음.

부위원장: 나노대에는 있는지.

나노: 나노에너지공학과임.

부위원장: 저번에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듯함. 예술대학에 후보자 등록이 되지 않은 단위가 있는지.

예술: 다 올라왔음.

부위원장: 그러면 모든 학과에서 다 등록이 된 것인지.

예술: 맞음. 지금 전부 다 올라갔고, 경선도 있음.

부위원장: 의예과는 등록이 되었는지.

의대: 둘 다 등록되었음.

부위원장: 사회과학대학 등록되지 않은 단위 있는지.

사회: 없음.

부위원장: 약학대는 등록되었는지

약학: 다 등록되었음.

부위원장: 사범대학 선거관리위원장님은 지금 안 계시고, 일단 나머지 단위는 제가 다 연락을 통해서 전달받을 예정이고, 월요일부로 사범대학의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되면 저희가 모든 후보자의 정보를 종합해서 검증할 예정임. 휴학생이면 학생회비를 납부했는지의 유무 등을 모두 확인해 선거관리위원장님께 전달해드릴 예정이고, 공문을 통해 다시 한 번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 기한에 맞춰 후보자들의 정보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학본부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안내해드릴 것임. 피선거권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후보자에 등록한 경우에는 작년도의 사례처럼 모두 후보자 등록이 무효되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람. 한 가지 공지 사항만 더 드리면 작년 선거 때의 주요 지적 사례 중 1개였는데, 선거를 위해 사퇴한 후보자가 사퇴한 그 직위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거나, 대행하는 것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었음. 예를 들면 국장, 혹은 학생회장직을 사퇴한 이후 통상적으로 용인 가능한, 그러니까 인수인계 등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어떤 행사를 구체적으로 진행하거나 그 행사의 주요한 운영진으로 참여하는 등의 행위가 주요 지적 사례로 걸린 적이 있음.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선거관리위원장님들이 다 학생회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 같이 축하할만한 부분이, 후보자의 미등록으로 인한 선거 미진행 단위가 이렇게 적은 것은 올해가 처음임. 아마 각 단위의 우리 회장, 부회장님께서 열심히 일해주신 덕분이라 생각함.

예술: 아까 이해를 잘못된 것 같은데, 저희 단과대학의 두 단위의 후보자가 없음.

부위원장: 어디인지.

예술: 한국음악학과와 예술문화영상학과임. 등록 공고가 다 올라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 줄 알았음.

부위원장: 음악학과가 경선이 맞는지.

예술: 맞음. 한국음악학과는 후보자가 없음.

부위원장: 롤미팅 포함해 회의가 3시간 정도 진행되었는데 다들 정말 고생 많으셨음. 감사함.